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준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이준형, 유 용, 김경우,
김정태, 김제리, 이호대,
이현찬, 권영희, 이광호,
채인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기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,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민간단체 기부금품 등을 조성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‘민간단체 기부금품’을 ‘출연금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5조제5호 “출연금”을 “기부금품”으로 변경

- 출 연 금 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1. "기부금품"이란 환영금품, 축하금품, 찬조금품(贊助金品)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법인, 정당, 사회단체, 종친회(宗親會), 친목단체 등이 정관,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, 일시금,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
 - 나. 사찰, 교회, 향교,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(信徒)로부터 모은 금품
 - 다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정당,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 - 라. 학교기성회(學校期成會), 후원회,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출연금”을 “기부금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% 2.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. 정부의 보조금 4. 차입금 5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(단체)의 <u>출연금</u> 6.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	<p>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(단체)의 <u>기부금품</u> 6. (현행과 같음)